

시민중심 | 적극행정
강원제일 | 행복강릉

「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사업(스카이워크 설치)」
특정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

2024. 4.



강릉시

- 목 차 -

I. 평가기준

II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III. 세부평가기준

「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사업(스카이워크 설치)」

특정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

I. 평가기준

가. 개요

본 평가기준은 「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사업(스카이워크 설치)」 관급자재 및 특정공법(신기술 또는 특허)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입니다.

나. 평가방법

1) 1차 평가: 정량적평가(2차 평가 대상 업체 선정)

- 1차 평가 항목에 대하여 사업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며,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의 적합성 등을 판단합니다.
- 평가 결과 평가점수 상위 3개 업체를 2차 평가 업체로 선정합니다.
- 평가 결과 3순위 업체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.
 - ① 관급자재 금액이 낮은 업체
 - ② 경영상태 점수가 높은 업체(동점일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순)
 - ③ ①~②까지 모두 동점인 경우 평가부서 자체판단
- 평가결과는 1차 평가 상위 3개 업체에 대해서만 개별 통지하고 나머지 업체는 별도의 통지가 없습니다.
- 제안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.

2) 2차 평가: 정성적 평가(공법선정위원회)

- 1차 선정된 업체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
- 기능성, 시공 및 경제성, 안전 및 유지관리, 경관 및 환경성에 대해 종합적 평가
-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 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. 다만,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합니다.

3) 최종 대상업체 선정(정량적+정성적 평가)

-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합니다.

-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,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.
-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르며,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4) 공통사항

-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참여업체가 제안한 공사비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“0점” 처리합니다.

II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구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한도	평가자
계			100	
정량적 (객관적) 평가분야	공사비	- 제안된 신기술·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	10	사 업 담당자
	경영상태	-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	5	
	활용실적	- 최근 5년간 설계, 공사, 납품실적 (제안 참여자의 실적에 한함)	10	
정성적 (주관적) 평가분야	시공성	- 시공의 간편성, 편리성 - 시공 외의 부분(제작 후 이동설치 등) - 현장여건의 적합성 - 시공기간	20	평 가 위 원
	안정성	- 구조물의 안전성 - 내구, 내진, 내화, 내습성	15	
	유지 관리성	- 유지관리 용이성 - 유지관리 편리성 - 생애주기 등 경제성	25	
	경관성 및 환경성	- 제품 디자인 - 주변 경관 조화성 - 환경성	15	

Ⅲ. 세부평가기준

가. 정량적 평가(25점): 절대평가

구분	평가	평가기준	배점	비고																		
계			25점																			
정량적 평가	제안 금액	<p>○ 제안 평균금액 대비 백분율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/점수</th> <th>10점</th> <th>9점</th> <th>7점</th> <th>6점</th> <th>5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백분율</td> <td>90% 미만</td> <td>90%이상 ~ 95%미만</td> <td>95%이상 ~ 100%미만</td> <td>100%이상 ~ 105%미만</td> <td>105%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/ 공법 제안평균 공사금액)</p>	구분/점수	10점	9점	7점	6점	5점	백분율	90% 미만	90%이상 ~ 95%미만	95%이상 ~ 100%미만	100%이상 ~ 105%미만	105%이상	10점	사업 부서 평가						
	구분/점수	10점	9점	7점	6점	5점																
	백분율	90% 미만	90%이상 ~ 95%미만	95%이상 ~ 100%미만	100%이상 ~ 105%미만	105%이상																
경영 상태	<p>○ 신용평가등급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/점수</th> <th>5점</th> <th>4점</th> <th>3점</th> <th>1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회사채</td> <td>BB+,BB0이상</td> <td>BB0미만 BB-이상</td> <td>BB-미만 B-이상</td> <td>CCC+이하</td> </tr> <tr> <td>기업어음</td> <td>B+이상</td> <td>B+미만 B0이상</td> <td>B0-미만 B-이상</td> <td>C이하</td> </tr> <tr> <td>기업신용</td> <td>BB+,BB0이상</td> <td>BB0미만 BB-이상</td> <td>BB-미만 B-이상</td> <td>CCC+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/점수	5점	4점	3점	1점	회사채	BB+,BB0이상	BB0미만 BB-이상	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기업어음	B+이상	B+미만 B0이상	B0-미만 B-이상	C이하	기업신용	BB+,BB0이상	BB0미만 BB-이상	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5점
구분/점수	5점	4점	3점	1점																		
회사채	BB+,BB0이상	BB0미만 BB-이상	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																	
기업어음	B+이상	B+미만 B0이상	B0-미만 B-이상	C이하																		
기업신용	BB+,BB0이상	BB0미만 BB-이상	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																	
활용 실적	<p>○ 활용실적 평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10년간 설계, 공사, 납품실적은 제안 참여자의 실적에 한하며, 실적 기준금액은 금 1,000,000,000 원(금 십억 원)으로 한다.(기술사용 협약자나 특허의 전용·통상실시권자의 경우 신기술 보유자나 특허권자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)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(이하 “공공공사” 라 한다)의 설계에 적용하여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특허공법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여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<p>-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 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활용 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</p> <p>-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</p> <p>- 공사의 설계에 적용 활용한 실적으로 제안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준점수는 5점으로하며 활용건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 활용건수에 따라 가중치 부여(신기술, 특허공법에 해당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5">가 중 치</th> </tr> <tr> <th>1.0</th> <th>0.9</th> <th>0.7</th> <th>0.6</th> <th>0.5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활용건수(건)</td> <td>5 이상</td> <td>5 미만 ~4 이상</td> <td>4 미만 ~3 이상</td> <td>3 미만 ~2 이상</td> <td>2 미만 ~0 초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- 주1) 신기술활용실적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등 관계 법령 따른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</p> <p>- 주2) 특허공법의 활용실적은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</p> <p>- 주3) 활용건수 4건 활용실적 점수(신기술, 특허) = 10점(기준점수) × 0.9(가중치) = 9점</p>	구분	가 중 치					1.0	0.9	0.7	0.6	0.5	활용건수(건)	5 이상	5 미만 ~4 이상	4 미만 ~3 이상	3 미만 ~2 이상	2 미만 ~0 초과	10점			
구분	가 중 치																					
	1.0	0.9	0.7	0.6	0.5																	
활용건수(건)	5 이상	5 미만 ~4 이상	4 미만 ~3 이상	3 미만 ~2 이상	2 미만 ~0 초과																	

나. 정성적 평가(75점): 상대평가

구분	평가 분야	신기술 및 특허번호						비고
		평가항목	배점	최우수	우수	보통	미흡	
정성 평가	시공성	○ 시공의 간편성, 편리성	5점	5점	4점	3점	2점	
		○ 시공 외의 부분 (제작 후 이동 설치 등 이 외의 문제가 없는지)	5점	5점	4점	3점	2점	
		○ 해당 현장여건(시공에 필요한 장비 거치장소 확보, 주변 지형현황, 시공시기 등에 문제없이 적용 가능한지)	5점	5점	4점	3점	2점	
		○ 시공기간이 적절한지	5점	5점	4점	3점	2점	
	안정성	○ 구조물의 안전성 ○ 현장 시공 시 공법 특성에 따른위험요소는 없는지	10점	5점	4점	3점	2점	
		○ 설치 후 내구, 내진, 내화, 내습성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안정성 확보 여부	5점	5점	4점	3점	2점	
	유지관리성	○ 유지관리 용이성 (유지관리 사항 발생 시 즉시 보수 가능한지)	10점	10점	8점	6점	4점	
		○ 정기·간급 유지보수 상황 발생시 일반적 보수가 가능한지(반드시 특허제품이나 공법을 사용해야 하는지)	10점	10점	8점	6점	4점	
		○ 생애주기(시간경과에 따른 정기 유지보수 비용)	5점	5점	4점	3점	2점	
	경관성 및 환경성	○ 제품 자체의 디자인	5점	5점	4점	3점	2점	
		○ 주변 경관과의 조화	5점	5점	4점	3점	2점	
		○ 시공 시 시공 후 환경문제가 없는지(도장, 유해동물 용해 등)	5점	5점	4점	3점	2점	
	소 계		75점					

다. 감점사항

1)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

-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(협력업체 등)의 소속 임·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(접촉은 SNS, 문자, e-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)한 것이 확인된 경우 평가 점수는 “0점” 처리됩니다.
-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(신고)된 경우 제안 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. * 붙임 서식 참조

[붙임 서식]

사전접촉여부 확인(신고)서

업 체 명	사전접촉자	일 시	세부내용

본인은 “ ”의 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위원 또는 소속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○ 귀하